

## 제 6 장 외 국 회 사

제614조(대표자,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)

①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려면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대표자 중 1명 이상이 대한민국에 그 주소를 두어야 한다.

제614조(대표자,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) ① (현행과 같음)

~~영업소를 설치한 후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.~~

② 전항의 경우에는 외국회사는 그 영업소의 설치에 관하여 대한민국에서 설립되는 동종의 회사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의 **지점과 동일한 등기를** 하여야 한다.

③ 전항의 등기에서는 회사설립의 준거법과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성명과 그 주소를 등기

② 외국회사가 제1항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일부터 **3주일** 내에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.

1. 목적
2. 상호
3. 회사를 대표할 자의 성명 ·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(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로 하되,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)
4.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
5. 본점의 소재지
6. 영업소의 소재지(다른 영업 소의 소재지는 제외한다)
7. 회사의 존립기간 내지 해산 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
8. 대한민국에서의 같은 종류의 회사 또는 가장 비슷한 회사가 **주식회사인** 경우에는 **본국에서의 공고방법** 및 제616조의2에 따른 **대한민국에서의 공고방법**

③ 제2항의 등기에는 회사설립의 준거법과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성명 · 주소 및 주민등록

<p>하여야 한다.</p> <p>④ 제209조와 제210조의 규정은 외국회사의 대표자에게 준용한다.</p>	<p>번호(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로 하되,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)가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 합명회사의 대표사원의 권한과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 준용</p>
<p>제614조의2(영업소의 이전 · 변경 등기)</p> <p>① 외국회사가 영업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3주일 내에 종전 소재지에서는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, 새 소재지에서는 제614조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614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.</p> <p>제615조(등기기간의 기산점)</p> <p>전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이 외국에서 생긴 때에는 등기기간은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기산한다.</p>	<p>제614조의2(영업소의 이전 · 변경 등기)</p> <p>① 외국회사가 영업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3주일 내에 종전 소재지에서는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, 새 소재지에서는 제614조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614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.</p> <p>제615조(등기기간의 기산점)</p> <p>제614조 제2항 · 제3항 및 제614조의2의 등기사항이 외국에서 발생한 경우 등기기간은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기산한다.</p>

#### 제616조(등기전의 계속거래의 금지)

- ① 외국회사는 그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제61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하기 전에는 계속하여 거래를 하지 못한다. ~~(등기 전에는 일시적 거래도 할 수 없다)~~

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자는 그 거래에 대하여 회사와 연 대하여 책임을 진다.

#### 제616조의2(대차대조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것의 공고)

- ① 외국회사로서 이 법에 따라 등기를 한 외국회사(대한민국에서의 같은 종류의 회사 또는 가장 비슷한 회사가 주식회사인 것만 해당한다)는 제449조에 따른 (재무제표)승인과 같은 종류의 절차 또는 이와 비슷한 절차가 종결된 후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대한민국에서 공고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의 공고에 대하여는 제289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
#### 제617조(유사외국회사)

외국에서 설립된 회사라도 대한민국에 그 본점을 설치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영업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설립된 회사와 같은 규정에 따라야 한다(=대한민국 국내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한다).  
~~(외국회사와 달리 취급하여야 한다)~~

#### 제618조(준용규정)

- ① 제335조, 제335조의2부터 제335조의7까지, 제336조부터 제338조 까지, 제340조제1항, 제355조, 제356조, 제356조의2, 제478조제1항, 제479조 및 제480조의 규정은 대한민국에서의 외국회사의 주권 또는 채권의 발행과 그 주식의 이전이나 입질 또는 사채의 이전에 준용한다.

② 전항의 경우에는 처음 대한민국에 설치한 영업소를 본점으로 본다.

#### 제619조(영업소폐쇄명령)

- ①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(=법원이 직권으로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는 없다).  
~~(법원은 필요한 경우 외국회사에 대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다)~~

1. 영업소의 설치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
2. 영업소의 설치등기를 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한 때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지

급을 정지한 때

3. 회사의 대표자 기타 업무를 집행하는 자가 법령 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

② 제17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(보전처분, 담보제공명령)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.

제620조(한국에 있는 재산의 청산)

①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의 폐쇄를 명한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그 회사 재산의 전부에 대한 청산의 개시를 명할 수 있다. 이 경우에는 법원은 청산인을 선임하여야 한다.

② 제535조 내지 제537조와 제542조의 규정(청산절차)은 그 성질이 허하지 아니하는 경우 외에는 전항의 청산에 준용한다.

③ 전2항의 규정은 외국회사가 스스로 영업소를 폐쇄한 경우에 준용한다. (~~외국회사가 스스로 영업소를 폐쇄한 경우에는 청산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~~)

제621조(외국회사의 지위)

외국회사는 다른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한민국에서 성립된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로 본다.